자문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20. 1. 6. (규정 제27호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춘천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원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문화의 발굴, 보존, 계승 및 보급에 관한 사항

2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한다.

제4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원하는 때

2. 질명,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

제7조(소집) 원장은 각종 사업 및 문화원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수당)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 (2020. 1. 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개최된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